

국가종합계획 조사: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입법조사관 하혜영

Tel. 788-4562/Fax. 788-4569

E-mail:hahy21@nars.go.kr



# 요 약

## 질의 요지

국가종합계획 조사: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회답일 2016.11.29.)

### ■ 조사·분석 방향

- 국가종합계획 조사: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 ■ 주 요 내 용

- 회답서에서는 행정자치부 소관 법률 중에서 중장기 국가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을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회답서에서 정리한 법률 명은 다음과 같음
- I.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전자정부법」, 「책임운영기관법」,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도로명주소법」
- II. 지방재정 및 지방행정 분야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목 차

1. 개요 .....	1
2. 일반행정 분야 .....	1
3. 지방재정 및 지방행정 분야 .....	4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1. 개요

- 이 회답서에는 행정자치부 소관 관련 법률 중에서 중장기적으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을 정리한 것임

## 2. 일반행정 분야

### (1) 조직 및 전자정부

#### □ 책임운영기관법

- 행정자치부장관은 5년 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제3조의2(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5년 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책임운영기관 전반의 운영점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조직 개편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관리계획 및 연도별 운영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기관리계획과 연도별 운영지침 및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전자정부법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함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이하 "전자정부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3.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
4. 전자적 행정관리
5.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확대 및 안전성 확보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7. 정보자원의 통합·공동이용 및 효율적 관리
8. 전자정부 표준화, 상호운용성 확보 및 공유서비스의 확대

9.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과 성과 관리
  10.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 재설계
  11.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12. 그 밖에 정보화인력의 양성 등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정보관리 및 정보보호

###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해야 함

**제9조(기본계획)**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4.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
5.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의 활성화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기본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함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①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3. 공공데이터의 등록 및 이용 현황
4. 제공 및 이용 가능한 공공데이터의 확대
5.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의 제공기술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8. 공공데이터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11.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기타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 방향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 일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추진 시책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도로명주소법

-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이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함

**제5조(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의 수립·확정)**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침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도 집행계획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 구분과 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사업별 내용과 사업량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기간 및 연도별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
5.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판단 및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도로명주소 전환 대상지역과 전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3. 지방재정 및 지방행정 분야

#### (1) 지방재정

##### □ 지방공기업법

- 자산·부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직 영기업의 관리자는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제9조의2(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① 자산·부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이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2.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방안
3. 경영적자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개선계획, 요금 적정화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관리계획
4. 전년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
5. 그 밖에 지방직영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5.28.>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5.28., 2014.11.19.>
-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5.28.>
-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지방행정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

※ 이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부터 5년간 존속함

**제5조(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44조에 따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위원회는 수립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와 협의하여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1.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사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행정자치부장관은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국가 안보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 ② 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시책
  3. 권역 구분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4. 자연생태 및 산림자원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의 보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6.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와 산지의 계획적·생태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7. 평화통일 기반시설 또는 통일지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9. 통일 이후 남북공동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지역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11. 군사시설의 보전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12. 농어업·임업 등 산업기초시설의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13. 전기·통신·가스 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14.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5. 풍수해 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6. 문화재의 발굴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7.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8. 도로·항만·공항·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19. 교육·의료·후생 시설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0. 민방위 경보, 대피시설 등 주민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의 거리와 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도 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시·도발전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9조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⑧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⑨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할 때 시·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⑩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⑪ 제2조제1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계획수립 또는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따르도록 하고, 그 대상은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반환공여주변지역 등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근로자 및 사업자 전직·전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6.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확충사업에 관한 사항
7.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 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10.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
11.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